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 508

발의연월일: 2021년 4월 13일

제 출 자: 자치행정위원회

1. 수정이유

2020년도 12월 조례 제정 당시 부칙으로 기 마련해둔 규정에 대하여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안 제5조 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를 종전과 같이 하기로 한다.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개정한다.

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를 종전과 같이 하기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	제5조(심의위원회) ①
의 사항을 <u>심의,</u> 시장의 자문에	<u>심</u> 의하고 <u>,</u>
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육	
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	
회 '라 한다)를 둔다.	·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삭 제	
7.(생략)	7.(현행과 같음)
8.(생 략)	8.(현행과 같음)